

제 13 장

경제협력

제 13.1 조

목적

1. 양 당사국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제 성장의 촉진을 위하여 상호 이익을 위한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을 증진한다.
2. 이 장에 따른 경제협력은 이 협정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무역 및 투자 원활화 계획을 지원하며 양 당사국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장 접근성과 개방성을 더욱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의 공동의 이해에 기초한다.

제 13.2 조

적용범위

1. 이 장에 따른 경제협력은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이 협정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 및 활용을 지원한다.
2. 이 장에 따른 경제협력은 초기에는 다음의 분야에 집중한다.
 - 가. 에너지 및 자원
 - 나. 선진산업
 - 다. 순환경 제

라. 시청각서비스와 공동제작

마.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적 농업

바. 보건의료 산업

사. 관광

아. 운송

자. 해운과 해양

차. 디지털 경제/무역

카 귀금속

타. 공급망

파. 경쟁

하. 바이오경제, 그리고

거.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분야

3. 양 당사국은 경제협력 활동에 관한 연례작업프로그램에서 경제협력을 위한 그 밖의 분야의 추가를 포함하여 위의 목록을 수정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4. 부속서 13-가부터 마까지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13.3 조

경제협력 활동에 관한 연례작업프로그램

1. 경제협력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제출한 제안에 기초하여 경제협력 활동에 관한 연례 작업프로그램(이하 “연례작업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채택한다.
2. 이 장에 따라 개발된 연례작업프로그램의 각 활동은
 - 가. 제 13.1 조에서 합의된 목적에 따른다.
 - 나. 무역 또는 투자 원활화와 관련되고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한다.
 - 다. 양 당사국에 관련된다.
 - 라. 양 당사국의 상호 우선순위를 다룬다. 그리고
 - 마. 기존의 경제협력 활동의 중복을 피한다.

제 13.4 조

공급망

1. 양 당사국은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보장하고 교란과 취약성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는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 간의 조정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충격을 예측할 수 있거나 견딜 수 있거나 충격으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복원력 있는 공급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국의 법과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면서 투명성, 다변화,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자 한다.

제 13.5 조 경쟁정책

1. 양 당사국은 양국의 무역관계에서 자유롭고 왜곡되지 않은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양국의 국내법, 규정과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경쟁정책의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그러한 협력을 수행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반경쟁적 관행과 그것의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협의는 각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경쟁법과 규정을 개발하고 유지하며 집행하는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제 13.6 조 자원

1. 이 장에 따른 경제협력을 위한 자원은 양 당사국이 합의한 방식으로 그리고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제공된다.
2. 양 당사국은 연례작업프로그램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당사자들과의 협력 및 외부 당사자들로부터의 기여를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고려할 수 있다.

제 13.7 조 협력 수단

양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을 통하여 기술적, 과학기술적 및 과학적 경제협력을 장려하도록 노력한다.

- 가. 공동회의, 세미나, 워크숍, 회의, 훈련 및 지원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주최

- 나. 전문 훈련을 위한 연구방문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학계, 연구기관, 민간 부문 및 정부기관의 대표단, 전문 직업인, 기술자 및 전문가 교류
- 다. 무역 진흥에 관련된 양 당사국의 민간 부문과 기관 간의 대화 및 경험 교환
- 라. 아랍에미리트의 정부경험교환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부 개발 및 현대화 분야의 경험과 우수 관행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공유플랫폼의 개시
- 마. 양 당사국 기업 간의 공동 사업 이니셔티브 증진, 그리고
-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 13.8 조 경제협력위원회

- 1.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을 위하여, 양 당사국은 경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2.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가. 이 장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 나. 장래의 협력 또는 역량 강화 활동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확인하고 새로운 발상에 합의한다.
 - 다. 연례작업프로그램 제안과 그 이행 메커니즘을 만들고 개발한다.
 - 라. 연례작업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례작업프로그램의 진정 상황을 조정, 점검 및 검토한다.

- 마. 주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연례작업프로그램의 개정을 제안한다.
- 바.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상황 파악, 점검 및 벤치마킹을 수행하고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에서 피드백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그 밖의 위원회 또는 부속기구와 협력한다. 그리고
- 사. 이 장의 이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공동위원회와 협의한다.
3. 위원회는 다음에 의하여 조정된다.
-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경제부 또는 그 승계기관

제 13.9 조

제 15 장(분쟁해결)의 비적용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 15 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부속서 13-가
에너지 및 자원

1. 양 당사국은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서 더 강력하고 더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장에 따른 협력을 증진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에너지 공급망 전체에 걸친 협력의 증진이 양국의 공동 목적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 가. 석유와 가스의 탐사, 채굴 및 생산과 같은 업스트림 활동
 - 나. 석유의 정제, 석유화학물질의 처리, 가스의 액화와 원유 및 석유제품의 운송 및 유통과 같은 다운스트림 및 미드스트림 활동, 그리고
 - 다. 수소 생산, 저장, 운송, 응용 및 충전소
3. 에너지 및 자원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가. 천연가스, 지속 가능한 탄화수소에너지(CCUS 및 수소를 포함한다) 및 바이오에너지와 같은 대체 및 재생 에너지원의 개발 및 이용
 - 나. 에너지 및 자원과 관련된 양 당사국의 영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의 설계 및 개발, 그리고
 - 다. 환경 영향이 낮은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부속서 13-나

선진산업

1. 양 당사국은 복원력과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경제 발전, 안정 및 번영을 위한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선진산업에 대한 협력을 증진한다.
2. 선진산업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가. 스마트 기계 및 자율 제조와 같은 선진 제조, 그리고
 - 나.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및 생명공학과 같은 선진 기술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선진 산업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 가. 합작사업의 이행, 기업 간(B2B) 및 기업 대 정부(B2G) 유대 강화, 정부 간(G2G) 협업 증진 및 제3국(다자간 G2G)으로의 협력 증대
 - 나. 공동 R&D 및 스타트업 또는 합작투자의 공동 설립과 그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의 제공, 그리고
 - 다. 양 당사국이 합의한, 선진산업에 대한 그 밖의 형태의 협력

부속서 13-다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적 농업

1. 양 당사국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공동의 비전으로 인정하며,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적 농업 분야에서 더 강력하고 더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장에 따른 협력을 증진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 분야에서 협력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 가.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적 농업 분야의 경험, 정보, 우수 관행, 혁신 및 현대 기술의 교환
 - 나. 소규모 농장에 경제적으로 유익한 기술을 강조하는,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적 농업 관련 도전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연구
 - 다.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적 농업 분야에서 양 당사국의 민간 부문 간 협업을 위한 기회 및 투자 증대
 - 마. 양 당사국의 상호 관심 분야에서 프로젝트 공동 마련, 그리고
 - 바. 양 당사국이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분야

부속서 13-라
보건의료 산업

1. 양 당사국은 상호 이익에 기초하고 각국의 국가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 산업에서의 협력을 장려한다.

2. 보건의료 산업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공중 보건 정책 및 관리

나. 의료 및 제약 정책 및 관리

다. 병원 보건의료

라. 디지털 보건의료, 그리고

마. 보건의료 및 의료 장비의 신기술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보건의료 산업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가. 보건의료와 의료 및 제약 과학 분야에서의 인력 훈련

나. 양 당사국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다. 한쪽 당사국의 의료 기관을 다른 쪽 당사국에서 홍보, 그리고

라. 보건의료 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협력

부속서 13-마

바이오경제

적용범위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바이오경제 부문은 바이오의약품, 바이오화학 및 바이오에너지, 바이오환경, 바이오의료기기, 바이오장비 및 바이오기기 그리고 바이오자원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제 1 절

혁신에 대한 협력

2. 양 당사국은 바이오경제 분야에서 혁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양 당사국 간 기술적인 혁신을 장려하고 증진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협력은 다음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양 당사국이 합의한 특정 분야를 지정

나. 연구소, 기업 및 투자자 간의 중개를 적극적으로 지원. 양 당사국은 비즈니스 포럼과 간담회를 포함한 중개 행사를 개최한다. 이러한 행사는 최소 연 2회 개최될 것이며, 혁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아이디어를 논의하며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장려할 것이다. 그리고

다.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프로젝트를 이행할 양 당사국의 연구 기관 및 기업을 지정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이용 가능한 경우 그리고 국가 경제 발전 및 산업 정책에 따라 제공. 프로젝트를 통하여 개발된 기술 및 산출물의 소유 및 활용은 양 당사국과 프로젝트 이행자 간의 사전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3. 양 당사국은 제 2 항에 규정된 분야 및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바이오경제전담반을 설치한다. 전 담반은 진전 상황을 검토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향후 활동을 계획하기 위하여 최소 연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전 담반은 이 절의 제 2 항가호에 규정된 협력 분야의 지정이 이 협정 발효 후 신속하게 개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전 담반은 또한 이 절의 제 2 항나호에 규정된 그 밖의 분야가 이 협정 발효 후 신속하게 개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양 당사국은 관련 정부 대표 및 연구 전문가들의 개방형 혁신 모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이는 개방형 혁신의 구성 및 기능, 그 이점 및 그러한 모델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적 체계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의 교환과 전파를 포함할 것이다.

제 2 절

공급망 복원력에 대한 협력

정의

5. 이 절의 목적상,

바이오공급망이란 양 당사국의 바이오경제 분야에서의 기업 간 경제 · 상업 · 무역 관계를 말한다.

공급망 교란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중단, 자연 또는 부족을 포함한다.

가. 어느 한쪽 당사국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나. 재료, 물품 또는 제품의 국경 간 이동이나 그에 대한 접근을 중대하게 저해한다.

공급망 복원력에 대한 협력

6.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바이오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하고 자의적이며 부당한 제한 또는 장애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한다.
7. 조치의 개발·채택·적용 시 그리고 이 협정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양 당사국은 바이오공급망에 대한 조치의 효과를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8. 양 당사국은 바이오공급망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경우 수입 의존도, 가격 및 교역량 그리고 전 세계적인 공급 및 수요 변화를 점검하도록 노력한다.
9. 양 당사국은 원재료 수요, 수요 예상치, 제조 및 가공 능력에 관하여 해당 분야 또는 상품에 대한 시장 집중이 존재하는 경우, 공급원의 다변화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10. 양 당사국은 어떤 재료, 물품 또는 제품이 바이오경제에 필수적인지 공동으로 결정하고, 각국의 영역에 대하여 그러한 생산품의 저장 용량을 평가하도록 노력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생산품에 대한 자국의 저장 용량의 최적화 및 향상을 증진하고,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한 이용 가능한 용량을 평가하도록 노력한다.

공급망 교란 시 협력

11. 양 당사국은 공급망 교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공급망 교란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서로를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12. 공급망 교란을 겪고 있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다음을 하도록 노력한다.
 - 가. 각 당사국의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작업반을 설치하고 요청 접수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면 또는 화상으로 회합한다.

나. 공급망 교란을 겪고 있는 분야 또는 생산품(이하 “영향을 받는 분야 또는 생산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급망 교란의 원인, 공급망 교란의 예상 지속기간 및 도움이 될 다른 쪽 당사국의 지원과 같은 정보를 공유한다. 그리고

다. 영향을 받는 분야 또는 생산품에 대한 통관 절차의 신속화, 필요한 생산품을 수출하려는 용의가 있는 기업에 관한 정보 제공 그리고 양 당사국이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그 밖의 조치나 정책과 같은,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나 정책을 논의한다.

13. 당사국이 공급망 교란 동안 바이오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하며 균형적이고 투명하며 일시적이고 이 협정,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그 밖의 관련 국제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합치한다. 그러한 조치나 정책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은 다음을 하도록 노력한다.

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조치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의 시기적절한 공표 및 전파를 보장한다.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조치에 관한 협의를 수행한다. 이러한 협의는 가능한 한 조속히 개최되며 이메일, 영상 또는 전화 회의나 양 당사국 간 합의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개최될 수 있다. 그리고

다. 그러한 협의에서 합의될 수 있는 조치를 수행한다.

제 3 절

바이오경제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교류

14.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한 분야에 특히 집중하여, 바이오경제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요 기반 인력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협력한다.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훈련 커리큘럼, 방법론 및 자료 개발에 협업한다.

15. 양 당사국은 관련 정부 공무원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정부 공무원 간 정보 및 지식 교환의 증진에 협력한다. 양 당사국은 바이오경제 분야에서 정부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한다.

16. 양 당사국은 바이오산업에서의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교류와 관련된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서의 우수 관행과 경험을 공유한다.